

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5 - 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결정 및 촉진 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11호(2009.03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43호(2011.06.0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307(2012.11.15.)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및 2009.11.27. 조합설립인가, 성북구고시 제2012-89호 (2012.06.14.)로 사업시행인가된 성북구 정릉1동 192번지 일대 길음3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9조 제2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15년 2월 일

성 북 구 청 장

관 리 처 분 계 획 인 가 고 시

1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사업의 명칭 :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
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1동 192번지 일대(19,488.00㎡)
4. 사업시행자 :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오경석)
〔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34, 2층(정릉동)〕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5년 2월 일
6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등 건축계획

(단위 : ㎡)

구 분	대지면적	동수	층 수	세대수	연면적
공동주택분양	16,015.78	5	지하4층~ 지상24층	399	65,272.50
상가	382.22	-		-	977.20
소계	16,398.00	16		1,562	66,249.70

2) 토지이용계획

(단위 : m²)

총 계 (m ²)	택 지	정비기반시설				
	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	소 계	도 로	공 원	경관녹지	공공공지
19,488.00	16,398.00	3,090.00	1,241.00	948.00	707.00	194.00

다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 공급세대수												상가 면적 (m ²)
	계	59m ²					73 m ²	84m ²					
		A	B	C	D	T		A	B	C	D	E	
계	399	80	14	12	17	9	39	107	55	39	11	16	977.20
조 합 원	139	55	8	3	4	5	11	48	3	2			
보류시설	3	1					1	1					
일반분양	217	12	4				27	58	52	37	11	16	
소형주택	40	12	2	9	13	4							

라. 신설 또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

(단위 : m²)

신 설					용도폐지		
종류	명칭	규모	설치비용	관리청	종류	명칭	규모
도 로	중로2-418 외2	1,241.00	4,509,110,000	성북구	도로	도로	3,843.00
공 원	소공원	948.00	3,292,531,000	성북구			
경관녹지	녹지	707.00	2,726,604,000	성북구			
공공공지	공공공지	194.00	651,200,000	성북구			
계		3,090.00	11,179,445,000				

마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

-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2015년 4월부터 일부철거 예정

※ 위 철거 예정시기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7.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(☎ 02-2241-2854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